

농림축산식품부

개 선 요 구

제 목 농기계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부적정

기 관 명 기장군

내 용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임대농기계 구입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곡물산업육성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업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4일(2회) 이내,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 입·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임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자는 임대료 및 택배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지정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임대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용자 주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임대계약을 제한(1회 위반 시 1월, 2회 위반 시 3월, 3회 위반 시 1년 임대 정지)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반드시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산정하고, 임대료는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고시한 금액을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해야 되며 징수한 임대료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재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기장군에서는 조례에서 임대기간을 일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농민들의 일손편의를 돕는 다는 차원에서 【표 1】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별표 1)”을 일단위가 아닌 회단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관련 조문인 제9조와 제10조간의 불일치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별표 1)

농기계 취득가액	임대료(단위 : 천원/회)	비 고
500만원 미만	10	농기계 취득가액은 평균 구입가로 하며, 적용시기는 다음연도 1월로 한다. 농산물건조기의 임대료는 여닫이문 1칸을 10,000원으로 한다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3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40	
3,000만원 이상	50	
* 농기계 택배료	왕복 20천원/편도 10천원	

* 조례개정 경과 : 2009.4.9 제정(2일/천원), 2014.11.24, 2016.12.27 일부개정(천원/회)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장군에서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기초로 감사한 결과, 총 4,201건 중 3,996건(95.1%)에 대해 임대일수를 통상적으로 1~3일까지 추가하거나 오류 신청된 것을 전례 답습적으로 회단위(2일/1회)로 인정하여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표 2】 농기계 임대기간 산정 운영현황

연도별	임대기간 산정 현황						수납 임대료 (천 원)	수납 방법
	총 임대건수 (A)	오류건수						
		2일→1일 (B)	3일→2일 (C)	4일→1일 (D)	소계 (E= B+C+D)	비율 (D/A)		
계	4,201	3,925	66	5	3,996	95.1%	76,345	무통장 입금
2014년	1,284	1,275	-	-	1,275	99.3%	23,630	
2015년	1,449	1,337	29	4	1,370	94.5%	25,465	
2016년	1,351	1,203	36	1	1,240	91.8%	24,170	
2017년	117	110	1	-	111	94.9%	3,080	

또한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청 개발 제공)’에서는 임대기간이 2일 이상임

에도 전체가 1일로 오류 처리되고 있으며, 임대료는 조례 제10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2일 1회를 기준으로 농업인 등 사용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어 조례 개정 및 운영중인 프로그램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

[개선]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고, 기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